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5.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정○선	'65.06.07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폐문 부재	전남 순천시 가곡길(이하 생략)

- 4.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9.(15일간)
-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조윤정(061-720-91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